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4. 2. 17(월)

산 업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 21.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1. 23.

라. 상정일자 : 2014. 2. 12(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 검토보고 :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희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요금 등의 납부 방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준조례와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급수공사에 대한 하자보증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6조의2)
-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재난지역 및 소방용수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40조)
-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 등 급수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의2)
- 법령 정비기준 및 표준조례에 따라 용어 및 자구 등을 수정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급수공사 하자보증방법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 등 근거규정 신설하고 동파예방과 누수방지 등 급수시설의 보호규정 신설 등 조례 운영상 급수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을 준용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임.
- 다만, 개정안 제18조제2항에서 급수공사 하자를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공사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하여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라고 종전 규정으로 정하였으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상·하수도와 관련한 공사별 책임기간이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급배수 2년으로 각각 명기되어 상위법과 상이한 바, 법령개정 이후부터 그 동안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하여 하자공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상위법령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다루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향후 명확히 규명하여 별도 보고를 바람.
- 안 제11조의 경우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란 내용을 삽입한 이유는 ?  
⇒ 기존의 수도계량기까지 관리 책임이 임의적으로 된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사항임.

#### 5. 회의결과 - 수정가결

- 안 제18조 제2항 중 “1년 이내에”를 삭제하여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 6.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허인환·이한구·윤제상·김영분·김정현·안병배·조영홍의원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8조 제2항 중 “1년 이내에”를 삭제하여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p>	<p>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② ----- 공사준공 후 1년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부담 -----.</p>	<p>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② ----- 공사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p>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도법」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급수설비중”을 “급수설비 중”으로, “시설물은”을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준공 후 1년이내”를 “공사준공 후”로, “시공자부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자부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를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6월 이내로 수도 사용자등”을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으로, “신청하되”를 “신청하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분양시”를 “분양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

1호 중 “3월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수처분후 3월이상”을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개선시”를 “개선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도사용자등(자동이체자에 한함)”을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개이상”를 “2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6항 중 “직전3개월분”을 “직전 3개월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20일 또는 말일”을 “말일”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를 “경우에는 수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 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공익등”을 “그 밖에 공익 등”으로 하여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

제41조의2를 제41조의3으로 하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급수설비의 보호) 시장은 급수설비의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5 위반내용란의 제1호 중 “급수내용”을 “급수 도용”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수도법」에 따라 ----- ----- ----- 그 밖의 ----- ----- ----- -----.</p>
<p>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교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p> <p>② 급수설비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p>	<p>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 해당 ----- ----- 제2항에 따른 ----- ----- 한정한다----- ----- -----.</p> <p>② 급수설비 중 ----- -----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 -----.</p>

현행	개정안
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p>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u>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u></p> <p>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u>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u>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u>시공사 부담으로</u>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 ----- <u>해당</u> -----.</p> <p>② ----- <u>공사준공 후</u>----- ----- 「<u>건설산업기본법</u>」에 따라 <u>시공사부담</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u></p>
<p>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 수도계량기는 <u>수도법에서 정하는 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미터 내부의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은 무독성, 유해화학반응 및</u></p>	<p>제19조의2(수도계량기 설치 등) ----- ----- 「<u>수도법</u>」----- ----- ----- -----</p>

현행	개정안
<p>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청동재질 등 친환경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 ----- -----.</p>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급수중지 기간은 6월 이내로 수도 사용자등이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p> <p>1. 수도 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p>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p> <p>-----.</p> <p>② ----- 6개월 이내로 수도사용자 등----- 신청하며 ----- 따라 -----.</p> <p>----- 분양 시-----.</p> <p>③ ----- 해당 -----.</p> <p>1. ----- 3개월 이상 ----- 사유 없이 -----</p>

현 행	개 정 안
<p>2. 정수처분후 3월이상 경과하여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p>	<p>2.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 -----</p>
<p>3.~5. (생 략)</p>	<p>3.~5. (현행과 같음)</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하여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정수처분 경우에는 수도전 개선시 구경별정액요금을 일괄징수할 수 있다.</p>	<p>제30조(요금의 조정) ① ----- ----- ----- 따라 해당 ----- ----- . ----- ----- 개선 시 ----- ----- .</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등이 변동되어 수시조정을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p>	<p>② ----- 규정에도 ----- ----- ----- ----- ----- 해당 ----- ----- .</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을 수도사용자등(자동이체자에 한함)이 직접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으로 계량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 -----수도사용자 등----- ----- ----- .</p>

현행	개정안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계량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 ----- ----- ----- -----.</p>
<p>⑤ 1개소에서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p>	<p>⑤ ----- 2개 이상----- ----- ----- -----.</p>
<p>&lt;단서 신설&gt;</p>	<p>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균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한 요금을 적용한다.</p>	<p>⑥ ----- ----- ----- 직전 3개월분----- ----- -----.</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 ----- -----.</p>
<p>제33조(납기의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20일 또는 말일로 하여 징수</p>	<p>제33조(납기의 징수방법) ① ----- ----- ----- 말일-----</p>

현행	개정안
<p>하며 납부고지는 납부마감일 <u>10일</u>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u>경우에 있어서는 수시</u>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u>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 <u>10일</u> 전-----.</p> <p>-----</p> <p>-- <u>경우에는 수시로</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u>-----.</p>
<p>&lt;신설&gt;</p>	<p><u>제3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u>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u></p>	<p>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p> <p>----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1. <u>「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u></p>

현행	개정안
<p><u>라 군수·구청장에게 설치결과를 통보하고 계량기를 설치한 자</u></p> <p>2.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3. <u>기타 공익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u></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u>를 설치한 경우</u></p> <p>2. (현행과 같음)</p> <p>3.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에 <u>따른 재난지역</u></p> <p>4. <u>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u></p> <p>5. <u>그 밖에 공익 등</u>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41조의2(급수설비의 보호) 시장은 급수설비의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제41조의2(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지원) ①·② (생략)</u></p>	<p><u>제41조의3(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u></p>